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계획안은 2003년 12월 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파주시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도시형 공장으로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일부 감면규정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조정하여 감면 범위를 축소 및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일반병원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에서 50% 경감으로 조정함(안 제5조)

나.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이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안 제9조)

- 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임대주택의 임대 의무기간이 30년으로 사실상 분양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면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함(안 제11조)
- 라.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비과세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형평상 과세로 전환(안 제13조)
- 마.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IMF이후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재산세의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으로 적용하여 지원하였으나,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5년간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으므로 세제지원 기간을 3년으로 단축 조정함(안 제14조)
- 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국회에서 개정을 보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경제자유구역등 감면 추가)여부와 일치시켜 최고 감면기간 적용 및 동법 동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감면 추가(안 제23조)
- 사. 경기침체와 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산업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장 이전 부지에 아파트 단지의 조성을 억제하고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내에 신·증설되는 도시형공장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하여 감면 조항 신설(안 제24조)

아.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있었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상 과세전환이 타당하나 농업기반공사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50% 경감으로 조정함(안 제26조)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 12. 31 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감면조항을 신설하며 현행 감면 규정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여 감면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하는 등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50% 경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병원과의 형평성유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로 보임.

○ 안 제9조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중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면제 대상이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도 주거용부동산과 동일하게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국민임대주택(4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위해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면제혜택을 추가하는 사항임.
- 안 제13조에서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비과세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였으며,
- 안 제14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신축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의 세율로 세제지원을 하였으나 주택경기 회복 등 상황변화에 따라 세제지원 기간을 3년간으로 단축 조정하는 것임.
- 안 제23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세(재산세, 종합토지세)를 15년간 전액 면제하는 감면규정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24조에서는 경기침체와 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장이전부지에 아파트단지의 조성을 억제하고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준공업지역내 신·증설되는 도시형공장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후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26조에서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여 왔으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어 조세형평상 과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업소세를 부과기로 하고 우선 50%를 경감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임.
- 동 조례의 개정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위한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들의 의견 수렴과 토론회, 관계부처 협의과정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 사항이며,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을 토대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